

1.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지방자치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제한하거나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하위법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경우 그 규정을 삭제하고,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과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을 정한 경우 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「산림보호법 시행규칙」 등 5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8. 31. ~ 10. 11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

제1조(「산림보호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”을 “지방산림청장”으로, “공개하여야”를 “공개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산림보호원”을 “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원”으로,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”을 “지방산림청장”으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첨부하여야”를 “첨부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”을 “지방산림청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제2조(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를 삭제한다.

제3조(「건축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

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4조(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”를 “지역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”로 한다.

제5조(「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양수산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”을 “해양수산부장관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해양수산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가”를 “해양수산부장관이”로 한다.

제11조 전단 중 “해양수산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가”를 “해양수산부장관이”로, “체결하여야”를 “체결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후단 중 “명시하여야”를 “명시해야”로 한다.

제12조 전단 중 “해양수산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가”를 “해양수산부장관이”로, “체결하여야”를 “체결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후단 중 “정산하여야”를 “정산해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[별지 제8호서식]

[] 신규고용
산림보호원 지원
[] 재고용
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하고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 30일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	컬러사진 (3cm×4cm) 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)
	주소	전화번호	
		전자우편주소	

「산림보호법」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보호원이 되고자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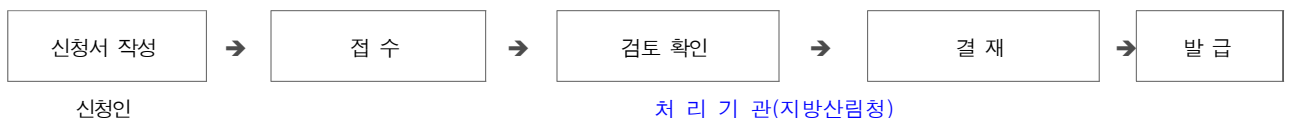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지방산림청장 귀하

첨부서류	산림보호원증 원본(재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 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

처 리 절 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산림보호법 시행규칙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5조(산림보호원의 자격 · 고용 방법 등) ① 삭제	제15조(산림보호원의 자격 · 고용 방법 등)
② <u>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</u>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원(이하 “산림보호원”이라 한다)을 고용하려는 경우 근무 지역, 근무 내용, 근무 시간, 보수 등을 관할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<u>공개하여야</u> 한다.	② <u>지방산림청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공개해야</u> ----.
③ <u>산림보호원이</u>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<u>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</u>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산림보호원으로 재고용되려는 사람은 산림보호원증 원본을 <u>첨부하여야</u> 한다.	③ <u>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원</u> ----- ----- ----- <u>지방산림청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첨부해야</u> ----- --.
④ <u>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또는</u>	④ <u>지방산림청장</u> ----- -----

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	-----
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지원자	-----
중에서 필요한 인원 범위 내에	-----
서 수행할 임무의 특성 등을 고	-----
려하여 산림보호원을 고용한다.	-----.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5조(가축분뇨의 처리비용) 별 제26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처리비용을 정할 때에는 가축분뇨의 양, 오염물 질의 종류·농도 및 배출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	<삭 제>

건축법 시행규칙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(건축허가 등의 수수료) ① · ② (생략)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 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, 납부한 수수 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	제10조(건축허가 등의 수수료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

주차장법 시행규칙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의2(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) ① 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(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)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.</u> 1. 2. (생략) ② ~ ⑤ (생략)	제7조의2(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역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u> 1. 2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(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대상자) <u>해양수산부장관,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는</u>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친어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.	제10조(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대상자) <u>해양수산부장관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그 밖에 <u>해양수산부장관,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</u> 가 수산종자의 개량 · 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	3. ----- <u>해양수산부장관이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11조(친어등의 대여) 제10조에 따라 <u>해양수산부장관,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</u> 가 친어등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친어등의 대여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계약서에	제11조(친어등의 대여) ----- ----- <u>해양수산부장관이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체결 <u>해야</u> -----.

는 대여 기간, 대여 친어등의 관리 및 반납, 사고 시의 처리방법 및 계약해지조건 등 대여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<u>명시하여야</u> 한다. 제12조(친어등의 교환) 제10조에 따라 <u>해양수산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가</u> 친어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친어등 교환 대상자와 계약을 <u>체결하여야</u> 한다. 이 경우 교환 대상 친어등 사이에 가격의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<u>정산하여야</u> 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<u>명시</u> <u>해야</u> -----. 제12조(친어등의 교환) ----- ----- <u>해양수산부장관이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체결해야</u> ----- ----. ----- ----- ----- <u>정산해야</u> -----.
-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	
연 락 처	(044) 201 - 3226
환경부 물환경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005
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247
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683